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61
----------	----

제출연월일 : 2006. 11. 3.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 가. 그동안 야생동·식물 보호관리는 「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었던 것을 야생동·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2004. 2. 9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제정 일원화하면서, 「자연환경보전법」에 규정하고 있던 야생동·식물 조항이 정비되었으며,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도 폐지되었음.
- 나. 이후 「자연환경보전법」이 2006. 1월부터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각각의 조례로 규정하여야 하나, 상기 개별법의 취지와 목적이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지 않고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통합관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의 수립시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함(안 제3조).
- 나.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다.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과 금지행위를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라.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정함(안 제11조).
- 마.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
- 바.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출입제한에 대하여 정함(안 제2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의사항 : 해당 없음
- 라. 기타
 - 1)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원안가결(2006. 8. 14)
 - 2) 입법예고 : 2006. 6. 2 ~ 6. 23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전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시 및 시민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과 야생동·식물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에 따라 자연환경과 야생동·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활동 등을 함에 있어 자연환경 훼손의 최소화와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대전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에 의한 대전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대전광역시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연보호운동 및 민간부분의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책 및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④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 및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고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실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실천계획의 추진상황을 2년마다 평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2 장 생태 · 경관보전지역 등의 보전

제4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시장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생태·경관보전지역(이하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명칭, 위치, 면적, 지정목적, 지정연월일, 행위제한 및 벌칙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법 제14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는 다

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 시장이 지정한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2. 법 제15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시장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시장이 당해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거나 생태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의 금지행위)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외에서 쥐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그 밖에 표식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3. 야생동·식물의 둉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4.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고의로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5. 특정수질유해물질·폐기물·유독물 등을 버리는 행위

6. 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자연발화성 물질, 기체

연료 등의 소지 행위

7. 가축의 방목 또는 동물 알의 채취 행위

제8조(중지명령 등)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9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안내판)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계구역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 매수) ①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 지역의 토지를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제11조(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지원) ①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이하 “인접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 및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적 농·임·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접지역의 범위는 수질오염 물질의 발생원 및 수량, 하천의 자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주택(「주택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제외한다)의 신축·증축·개축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 또는 분뇨의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경비는 정화시설의 종류·규모 및 대상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 3 장 자연환경의 조사 등

제12조(자연환경조사) ① 시장은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조사 대상지역, 각 지역별 조사기간 및 조사주체
2. 조사내용, 방법, 인원 및 소요예산
3. 조사자료의 정리 및 활용
4. 관계행정기관의 협조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2. 식생현황
3.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4.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5. 토양의 특성
6.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자연환경조사의 일부를 관할 구청장에게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정밀조사 등의 실시) ①시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한 지역 중에서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 또는 자연적·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조사자료의 체계적 관리) 시장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행정기관 및 시민 등이 관련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생태계의 변화관찰)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관찰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지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이를 행한다.

1.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그 밖에 희귀한 동·식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3.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휴식지
4.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②구청장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화관찰 결과 생태계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생태계의 변화관찰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분석하고, 생태계의 변화가 관찰된 지역에 대하여는 이의 보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자연환경조사원 등) ①시장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변화관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자연환경조사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변화관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그 밖에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등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조사원 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생태·자연도의 작성) ①시장은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고,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대전광역시 생태·자연도(이하 “생태·자연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지침을 고려하여야 하며,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함에 있어 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시장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열람을 거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생태·자연도는 환경부장관 및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생태계의 복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2. 외래 동·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그 밖에 과도한 이용 등으로 인하여 급격히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는 지역

제 4 장 야생동·식물 등의 보호

제19조(보호야생동·식물의 지정 등) ①시장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식물을 대전광역시 보호야생동·식물(이하 “보호야생동·식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할구역 내에서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동·식물
2. 관할구역 내에서 주로 서식하는 국내 고유종
3. 학술적·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동·식물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야생동·식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명, 지정연월일, 지정사유 및 주요 생태적 특성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야생동·식물이 보호가치 상실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보호야생동·식물 등의 보호) ①시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야생동·식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호야생동·식물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서식지역 및 서식분포 현황
2. 개체수 감소, 서식여건 변동 등에 대한 원인분석
3. 서식지 보호 및 복원 등 보전계획
4. 그 밖에 보호야생동·식물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시장은 보호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의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방안을 정하고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이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호야생동·식물을 보호하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 지역 및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토지의 임대, 그밖에 보전활동 수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구청장에게 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지정연월일, 행위제한 및 벌칙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이용방식의 변경 및 이용범위의 제한, 토지의 임대, 그 밖에 보전활동 수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및 중지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출입제한) ① 시장은 야생동·식물보호 및 멸종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위치, 면적, 기간 및 출입방법 등을 고시하고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지역 중에서 사람의 출입이 빈번한 경계지점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23조(공공시설의 녹화) ①공공청사,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공시설의 옥상, 벽면 등을 적극적으로 녹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공공시설의 녹화에 필요한 녹지율, 수목종류 등을 조사·분석하고 녹화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제24조(자연형 하천관리) ①「하천법」에 의한 하천 또는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이하 “하천”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하천을 정비하는 경우 이수와 치수에 지장이 없는 한 하천의 자연성을 고려하여 정비함으로써 자연경관 조성,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조성, 시민의 휴식지로서 적합한 환경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개,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인공화된 하천의 경우에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자연휴식지의 관리) ①시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휴식지의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보전하는 가운데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단체, 마을주민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제26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시장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보호야생동·식물 등 야생생물의 보호
2.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4.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홍보

제27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5.8.4 법률 7678호]

제3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2. 자연환경보전은 국토의 이용과 조화·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3.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은 인간활동과 자연의 기능 및 생태적 순환이 촉진 되도록 보전·관리되어야 한다.
4. 모든 국민이 자연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자연환경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어야 한다.
5.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이 파괴·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때에는 최대한 복원·복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자연환경보전에 따르는 부담은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하며, 자연환경으로부터 얻어지는 혜택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이 우선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자연환경보전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①환경부장관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침(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관리,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2. 중요하게 보전하여야 할 생태계의 선정,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거나 생태적으로 중요한 생물종 및 생물자원의 보호
3. 자연환경 훼손지의 복원·복구
4.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및 해당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5. 산·하천·습지·농지·섬·해양 등에 있어서 생태적 건전성의 향상 및 생태통로·소생태계·대체자연의 조성 등을 통한 생물다양성의 보전
 6. 자연환경에 관한 국민교육과 민간활동의 활성화
 7.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8.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③)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따른 추진방침 또는 실천계획(시·도지사의 경우 실천계획에 한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
2.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
3. 자연자산의 관리와 생태계의 보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는 사항
4.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5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①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증축(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3. 하천·호수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토석의 채취
 5.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당시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23조(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보전) ① 시·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역을 대표하는 자연생태·자연경관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기준·구역구분·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자연환경조사원)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의 자연환경조사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보완조사와 그 밖의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원의 자격·위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9조(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관광단지·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지에 대하여는 미리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5조(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①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연환경의 실태 및 보전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2. 훼손된 생태계나 종의 복원, 소생태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영상물의 제작 및 출판 등 자연교육과 홍보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비,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과태료)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 2006.8.4 대통령령 제19639호]

제27조(생태·자연도의 작성방법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생태·자연도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생태·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야생동·식물 보호법 [일부개정 2005.8.4 법률 7678호]

제3조(야생동·식물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 ①야생동·식물은 현재세대 및 미래세대의 공동자산임을 인식하고 현재세대는 야생동·식물과 그 서식환경을 적극 보호함으로써 그 혜택이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야생동·식물과 그 서식지는 효과적으로 보호됨으로써 야생동·식물이 멸종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태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이 야생동·식물을 이용할 때에는 야생동·식물이 멸종에 이르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시·도보호야생동·식물의 지정) ①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에서 그 수가 감소하는 등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준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야생동·식물에 대하여는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보호야생동·식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보호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 금지 등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출입제한) ①환경부장관은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멸종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행위
2. 군사목적상 필요한 행위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특별보호구역안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야생동·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행위

제33조(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시·도지사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이하 "시·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역의 위치·면적·지정일시 그 밖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8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제한 등 시·도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3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자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2005.5.31 법률 7561호]

제37조(환경보전자문위원회) ①환경보전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두고, 시·도지사 소속하에 시·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두며,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시·군·구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및 시·군·구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07호]

[별표 1]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4조제1항관련)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2.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월이 경과할 때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 나. 가록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를 보완 하지 아니한 때	법 제13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6월 등록말소